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법제처 업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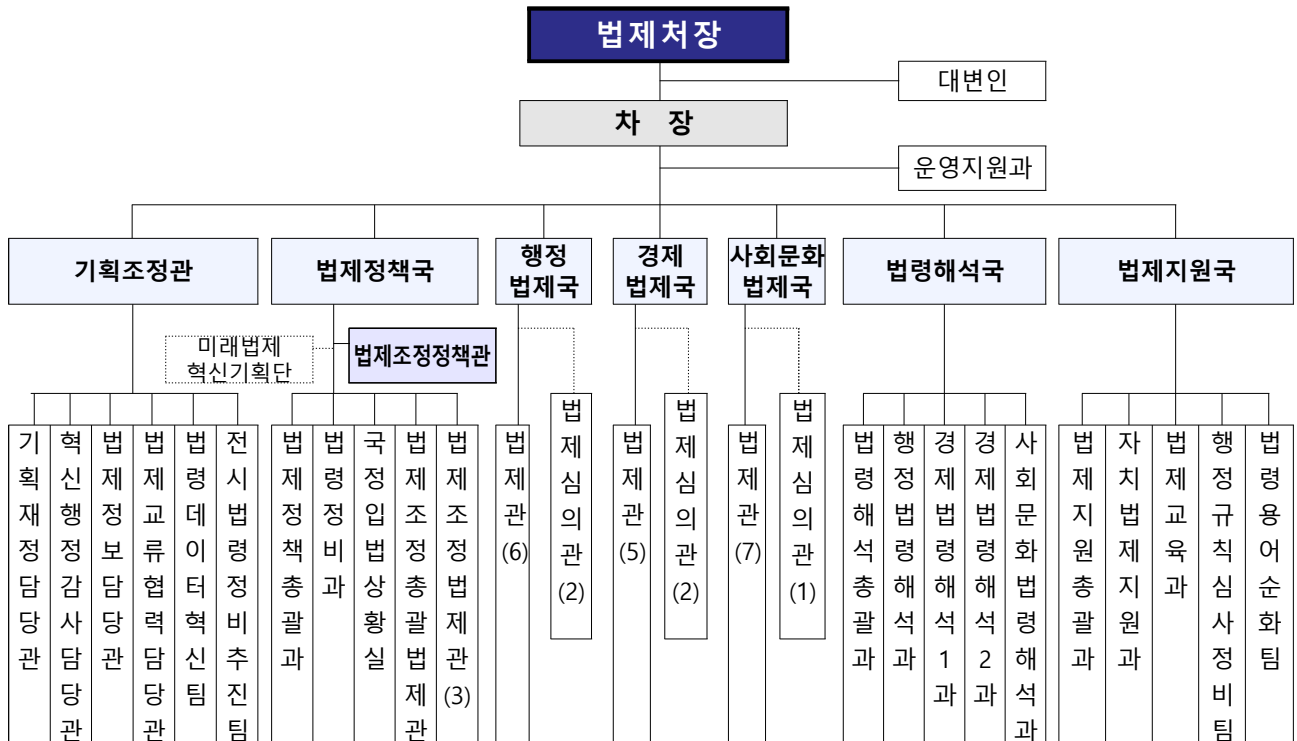
2025. 12. 12.

순 서

I. 일반현황	1
II.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3
III. 중점 추진과제	7
1.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7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9
3.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	13
4.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16
IV. 주요 쟁점이슈	18
1. 법령정비 전담체계 구축	18
2.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정부 내 조정·총괄 기능 강화 ..	18

I. 일반현황

1 기구 및 조직 현황



* 1처장, 1차장, 1조정관, 6국, 1정책관, 5심의관, 1단, 22법제관, 17과(담당관), 4팀

2 인원 현황

구 분	직급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기타*
합계	정 원	239	1	14	12	27	28	97	57	3
	현 원	236.1**	1	18	13	37	23	87.8	53.3	3

* 기록연구관, 전문경력관, 학예연구사 ** 시간선택제공무원(6명)에 따른 것임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45,733	60,588	14,855	32.5
인건비	23,780	24,948	1,168	4.9
기본경비	5,235	5,377	142	2.7
사업비	16,718	30,263	13,545	81.0
일반재정	8,672	9,492	820	9.5
법제업무정보화추진	8,046	20,771	12,725	158.2

정부 내에서 입법총괄 · 조정 기능을 전문적 · 체계적으로 수행

헌법상의 법치주의 이념 구현

정부입법의 총괄기능 수행

정부입법 총괄 · 조정

효율적 · 계획적인 정부입법 추진

- ▶ 정부입법계획 수립으로 입법의 효율성 · 계획성 강화
- ▶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 · 관리
- ▶ 증가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이견조정 및 법제지원

법령안 심사

정부 정책의 합헌 · 합법성, 일관 · 체계성, 합리성 보장

- ▶ 정부입법 과정의 위헌 · 위법적 요소 사전 제거, 국법체계의 통일성 유지
- ▶ 법령입안 · 심사 기준 정비(위헌결정 반영)
- ▶ 현장 및 정책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령심사

법령해석 · 의견제시

정책 마련 및 집행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성 유지

- ▶ 중앙부처 · 지방정부 · 국민의 신청에 따라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
- ▶ 중앙부처에 신속 · 명확한 법적 자문 제공하여 정책 추진 뒷받침

법령정비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법령 정비

- ▶ 체계적 · 적극적인 법령 관리시스템 구축
- ▶ 상시 정비로 법령의 생애주기 관리
- ▶ 국민 권익을 제한하고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정비
- ▶ 사후입법영향분석 실시

법령정보 제공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법령정보 제공
- ▶ 해외 법령정보 제공을 통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법제교육

법정부 법제역량 향상

- ▶ 중앙 · 지방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과 법령 · 자치법규 입안 역량 제고
- ▶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교육 확대

자치입법 지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역량 제고

- ▶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 자치법규 입안 지원 및 정비 지원

법제교류

법제발전 경험 전파, 기업 해외진출 지원

- ▶ 아시아 · 아프리카 국가 등 법제교류 및 협력 사업 추진
-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운영

Ⅱ.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

① '25년 성과 및 보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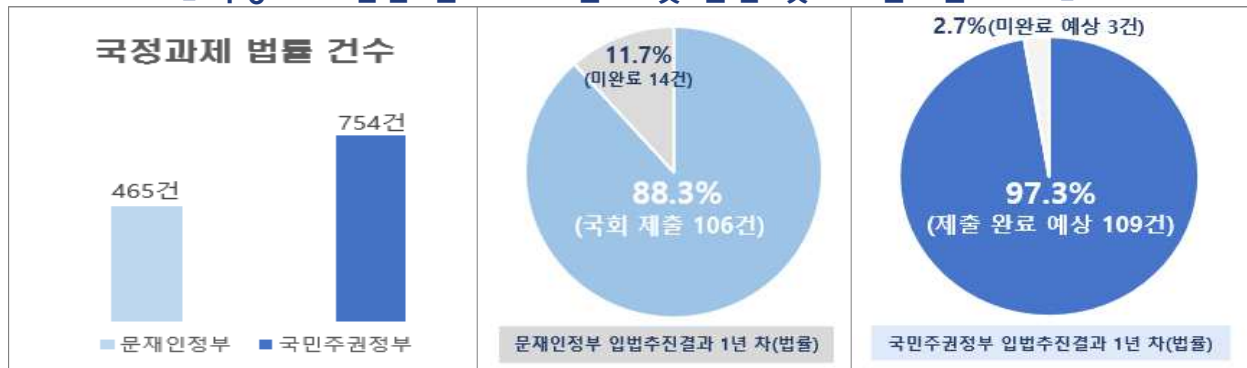
□ 숫자로 보는 국민주권 정부 6개월 성과



□ 국정입법 컨트롤타워 구축

-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및 민생·경제 현안의 신속한 법제화 지원을 위해, 법제처 내 국정입법상황실 설치(8.25.)
 - 「5개년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보고(9.16. 국무회의) 후, 매주 입법 추진상황 점검, 입법 장애요인 조기 파악 후 대응 실시
 - *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 필요사항 총 968건
 - 국정과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당·정·대 입법협의체 구성(9.18.), 국정과제 입법전략 마련 및 쟁점 법안 등 집중 지원 실시(4회 개최)

■ 국정과제 입법 관리과제 건수 및 출범 첫 해 완료율 비교 ■



➡ '25년 연내 추진 과제 입법계획이 대부분 연말에 집중되어 입법 장애요인 발생 시 대응 한계 有, '26년 이후 연간 입법계획 수립 시 일정 분산·조정 등 추진 필요

□ 국정과제 등 주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통일된 정부의견 마련

- 주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정과제 전담팀’ 구성(9월, 42개 법안 대상) 등, **종합적인 법제지원**(법적 쟁점 검토, 이견조정 등) 157건 실시

쟁점 「지역의사법」의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법」과 관련하여,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위반 시 면허취소, 전공의 수련과목 선택제한 등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의견회신 헌법 위반 소지 없다는 의견 신속 회신

- 과잉금지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헌법 위반 소지가 없음을 신속히 회신

➡ 법제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의 국회 법안심사 적극 대응 및 법안 국회 통과(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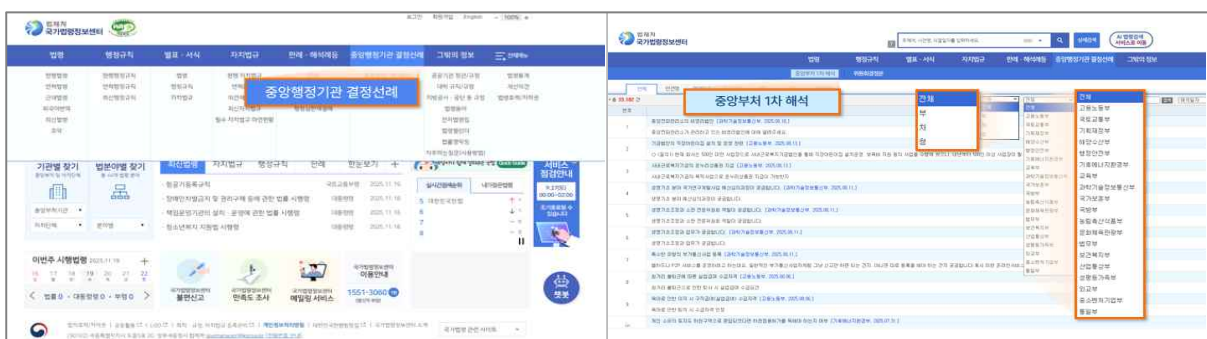
□ 정부 내 법적 자문 신속 제공

-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반복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280여 개 법률 전수조사·분석 및 개정안 제시
- (경제형벌 규정 완화 [국정과제19-2](#)) 국민·기업의 경영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형벌의 과태료 전환,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등 법제 개선 추진
※ 12월 국회 발의 예정인 55개 법률(107개 과제) 개정안 마련 및 신속 심사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공개로 국민 알권리 강화 [\[국정과제6-1\]](#)

- 국민의 알 권리 보장·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31개 기관*의 1차 법령해석 등 신규 정보 5만여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11.24.~)

- * 결정선례 개방 참여 중앙행정기관(누적): (‘22) 3개 → (‘23) 5개 → (‘24) 13개 → **(‘25.11월) 44개**
- 국세청 등 부처 협의를 통해 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하급심 판례(국세·지방세·산재보험) 등을 단계적으로 수집·개방



□ 숨은 규제를 없애고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령정비 추진

- (규제법령 정비)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달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행정법령 발굴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대한상의)·규제 유관부처 등과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 과제 50여 개 발굴·정비 추진
- (국민 삶을 보듬는 법령정비) 소상공인, 청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131개 법령 정비

구분	법령정비 내용
소상공인	영업공간·인력 보유 기준 개선 및 부담금·사용료 분할납부 근거 마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68개 법령 정비 예정(12월)
청년	군복무·임신·출산을 국가자격(영양사 등 24개) 법정 의무교육 유예·면제 등 사유에 포함 *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등 22개 법령 정비 완료(10월)
사회적 약자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 등 각종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 청소년증도 신분증으로 인정 등 * 「양자기술산업법」 등 12개 법령 정비 완료(10월) / 「외무공무원임용령」 등 4개 법령 정비 완료(10월)
일·가정 양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근로자도 '상시 근무'에 포함되도록 인적기준 개선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등 25개 법령 정비 예정(12월)

TF 등 임시조직을 통한 법령정비 추진으로 지속적·안정적 정비 기반 미흡

□ 지방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지방 의견 청취 제도화

- 국가정책의 논의·형성 단계부터 지방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정부위원회에 지방 추천자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46개 법령 정비(12월)

▶ 지방추천자 의무위촉직 위원 참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은 지역 주민의 삶과 긴밀함에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지방 참여가 미흡한 상황	정비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지방정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장을 의무 위촉하도록 규정

□ K-법제의 세계화 및 법치주의 확산을 위한 교류·협력

- (ODA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용 경험 및 법제 IT 기술을 바탕으로 네팔·우즈베크 등 해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 추진
* (네팔)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10월), (우즈베크) 시스템 ISP 수립 사업수행자 선정 공모 진행(12월)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공통 법제 현안의 공동 대응, 각국의 법제정책·법령정보 등의 체계적·지속적 협력·공유를 위한 협의체 설립(11월)
* 한국·몽골·태국·우즈베크 4개국 참여, 베트남·네팔 등 아시아 국가 추가 참여의사 표시

□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법제교육 실시

- 중앙·지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행정법 및 법령입안과정 등 총 83개 과정, 595회(41,055명 수료) 교육 실시로 법제 전문성 향상에 기여
* 법제기본과정, 법령해석과정 및 사례중심 자치법규입안과정 등 법제실무 중심 교육 강화

법제로 완성하는 다시 만난 세계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01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 ▶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촉촉한 입법 지원
- ▶ 신속한 법적 자문으로 막힘없는
현안 해결

02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 ▶ 낡은 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 ▶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 ▶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03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 ▶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 ▶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 ▶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04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 ▶ 헌법 가치에 기반한 법제업무로
정부입법 품격 제고
- ▶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Ⅲ. 중점 추진과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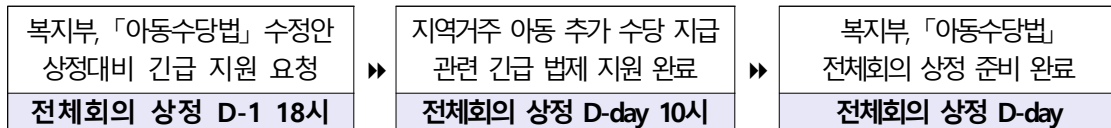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①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촘촘한 입법 지원

□ 국정입법 지원 강화[국정과제 9-1]

- (긴급입법 지원 상시화) 국정입법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장애 요인 발생 시 신속한 법제 지원(1~2일 내)을 실시하여 국회 통과를 뒷받침

※ 긴급 입법지원 예시



- (입법추진현황 시스템 신설) 온라인 “국정과제 입법추진현황 시스템” 신설*, 입법현황 DB화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입법 추진일정 분산, 후속 하위법령과 연계 등 효율적인 관리 가능

* ('26.1월) 시범운영 → ('26.2월) 개통(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내 구축, 국조실 협업)

□ 정부입법 관리체계를 의원발의 법안까지 확대

- (의원입법 지원) 정부제출법안 감소 및 의원입법 증가 추세*에 맞춰 정부입법 계획에 부수하여 정부의 “의원입법 추진계획”을 수립, 종합 관리체계 구축**

- 조문화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예비검토, 쟁점검토(합헌성 등), 이견 조정 등 종합적인 법제 지원 실시

* 제22대 국회: (발의) 의원 14,093건, 정부 441건 / (통과) 의원 2,810건, 정부 159건

** 입법계획 수립지침 소 부처 통보('25.10월), 정부추진 의원입법의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26.1월 예정)

- (중기입법 관리) 2년 이상 장기간 추진하는 법률안도 중기입법계획으로 빈틈없는 관리, 기존 연 단위 정부입법계획의 한계를 보완

□ 국정과제 하위법령 원스톱 밀착 지원

- (선제적 지원) 입법 완료된 국정과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개정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소관부처에 맞춤형 입안 지원 제공

- (입안·심사 일원화) 원스톱 입안심사로 개정기간 획기적으로 단축

※ 입안부터 개정까지 평균 150일 소요 → 원스톱 지원 시 평균 80일 소요, 최대 70일 단축 가능

② 신속한 법적 자문으로 막힘없는 현안 해결(국정과제 19-3)

□ 법령해석 “위원회 즉시상정” 제도 신설

- (즉시상정) 국정과제 이행, 사회적 갈등 해소, 민생현안 등 주요 안건의 신속·유연한 처리를 위한 위원회 즉시상정 제도 도입('26.1월~)
- 가장 빠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즉시 상정(보고 절차는 쟁점회의로 대체)하여, 검토 후부터 회신까지의 기간 크게 단축(4주 → 1~2주)

※ 즉시상정 안건 예시

- ① 자치분권 강화 등 국정과제·주요정책 중 법령개정 없이 해석을 통해 집행 가능한 경우
- ② 사회적 갈등·분쟁이 있으나 법령 해석상 이견 등으로 갈등 해소가 어려운 경우 등

□ 부처 주요 정책의 법적 쟁점에 대한 “법령 의견제시” 제도 운영

- 각 부처별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신속·정확한 법적자문 제공으로 적극행정 지원
- 복잡한 문제를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 증대에 발맞춰 법제처가 법률적 조력을 제공, 부처의 법적 검토 부담 경감



구분	법령 해석	법령 의견제시
성 격	정부 전체 통일적 견해를 제시하는 준행정입법적 성격	부처 긴급 요청에 대한 법적 자문 제시 성격
방 식	요건 검토 → 안건 검토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 → 회신	안건 검토 후 즉시 회신
소요기간	평균 2~3개월	약 2일

□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강화

-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이나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상 문제에 대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실시

▶ (사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 여부

회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무는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려는 것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
효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실시하여 작년 12월 대비 현재 운수종사자 수 및 운행 편수가 30% 가까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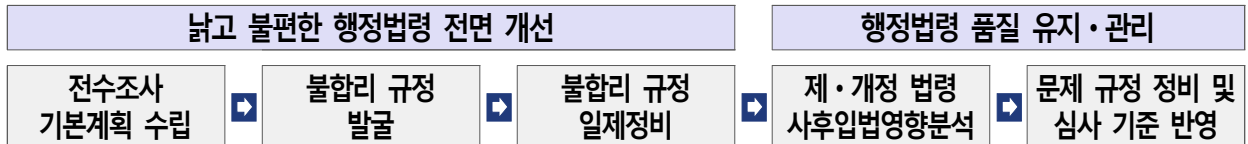
- 일방적 결론보다는 “대안”과 “갈등 조정 방안”을 함께 제공하는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간담회 확대* 실시('26.4월~)

* 의견제시 회신 → 조례 제·개정 → 주민 체감도 제고 사례를 대상으로 수시 개최

① 낡은 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 행정법령 생애주기형 관리체계 구축

- (방향) 3,454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로 낡은 규정을 일제 정비하고 그 이후 제·개정되는 주요 법령을 사후입법영향분석 범위에 추가, 환류 체계를 마련



→ 행정법령에 쌓인 먼지를 모두 털어내고,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지속 관리

- (계획 수립) 「국가 행정법령 품질개선 3개년 기본계획」 수립(~'26.3월), “경제 → 행정 → 사회·문화” 분야별 순차 전수조사* 로드맵 작성

* 전수조사 착수('26.4월~), 전수조사가 완료된 분야부터 순차정비 실시('26.9월~)

- (불합리 유형) 국민·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 규정 중심 조사

구분	규제 유형	비규제 유형
세부 유형	▲ 경제활동 저해 과도한 시설·운영 기준 ▲ 국민 생활 불편 유발 규정 ▲ 차별적 자격, 포괄적 결격사유 규정 ▲ 신산업·신기술 뒷받침 규정 미비 ▲ 규제 방식 negative 전환 필요 규정	▲ 법률 위임 범위 이탈, 내용 불합치 ▲ 하위법령에 대한 포괄 재위임 규정 ▲ 입법 부작위로 국민 불편을 유발 ▲ 그 외 법령의 체계 정합성 제고

- (조사·정비) 법제처 자체조사(부처협업 포함) 및 민간 참여형 조사를 병행, 수용률 제고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비기간 단축

▶ (규제: 시설기준)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설 기준 합리화

현행	「기초연구법」에 따르면 '고정 벽체(ex. 콘크리트벽)'로 공간을 분할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여 기업 여건에 맞는 공간 활용에 장애
개선	기업 여건, 융합형 연구공간 조성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다양한 공간 분할 수단(ex. 이동 벽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설 기준 마련

▶ (비규제: 입법부작위) 농어촌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고시 등 입법부작위 해소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표준계약서 등을 정하도록 했으나 고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혼란 유발
개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의 농어촌 주택 임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불편 해소

□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통한 행정법령 품질 관리

- (기본 방향) 개별 법제도, 공통 법제도에 대한 영향 분석을 확대하여,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개정되는 주요 법령에 대한 분석* 추진
 - * 분석기준 마련 →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범실시 → 기본계획 수립('26년) → 분석 추진('27년~)
- (대상) ①개별법제도(발달재활서비스 지원제도 등) 및 공통 법제도(수리를 요하는 신고 등), ②일제정비 후 제·개정된 법령 중 개정 범위가 크거나 중요도가 높은 법령
 - 제·개정 목적 달성도, 기존 법과의 연계성, 환경 변화 수용성 등 중점 평가
- (결과 활용)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

② 규제법령 협업정비

□ 범부처 규제법령 협업정비[국정과제 19-3]

- 규제 개선 수요 발생시 법제처가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 법령에 산재한 유사과제를 모두 발굴하여 정비하는 “협업정비” 제도화*
 - 국조실 등 규제개선 총괄기관 요청 시 정비과제 발굴 및 일괄정비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수시)
 - *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으로 협업 대상별 역할 제도화(~'25.12월)

<협업정비 예시>

- 국조실에서 폐지·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법령을, 다른 법령의 유사과제까지 확산하여 일괄정비 실시('26.上)
 - ① (서류 전자화) 영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종이 서류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도 구비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24건)
 - ② (인력·시설 기준 완화) 법령상 등록·지정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21건)

□ 지역 맞춤형 규제분야 법령정비[국정과제 52-2]

- 규제적·침익적 분야에서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비과제를 발굴,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일괄정비 추진('26.6월~)
- * 법제처 - 지방시대위원회 -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등) - 행정안전부 - 지방정부

▶ 금지행위·행위제한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정비 또는 위임근거 마련

현행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규정, 지방정부별 맞춤형 규제 개선 불가 (노점을 활용한 상행위 금지,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화 등)

개선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를 각 공원별 특성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조례 위임 근거를 신설

3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 소상공인·청년 등 맞춤형 법령정비[국정과제 61-3, 19-2]

- (소상공인 등 경영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정비과제 발굴·정비(~'26.11월)
- (경제 형벌 합리화) 형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 법제화 지원(연중)
- (청년·한부모가족 지원)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법령 전수조사 및 일괄정비 추진(~'26.8월)

정비 예시

▶ (경영지원)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종전 양도인에 대해 진행 중인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양수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없음

개선 양수인이 양도인의 제재처분 절차와 제재처분 이력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경제형벌 합리화)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개선 일반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인 만큼, 형벌이 아닌 1백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

▶ (한부모 지원)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추가 사용

종전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부모가족 예외 규정 없음

개선 한부모가족은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법령 새로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사업(“알법 사업”) 다각화

- (법령 새로쓰기) 법령 속 한자어를 최대한 우리말로 바꾸는 등 법령 전체의 용어·문장을 획기적으로 정비하는 새로쓰기 사업 추진('26.1월~)
※ 「세종특별자치시 한글 사랑 지원 조례」를 순 우리말로 개정하는 시범사업 추진
- (의원발의 법안 알법 검토) 법리적 쟁점이 없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알법 검토만 별도로 지원('26.1월~)
※ 예비검토 수요조사 시 소관 부처가 검토 요청 사항을 선택(①내용+알법 검토, ②알법만 검토 중 택일)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3개년 발전방향 수립) AI 기술을 활용한 어려운 용어 사전 차단, 쉬운 문장 자동 생성장치 도입 등 알법 사업 20년 계기 종합 발전방안 수립(~'26.11월)

4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국정과제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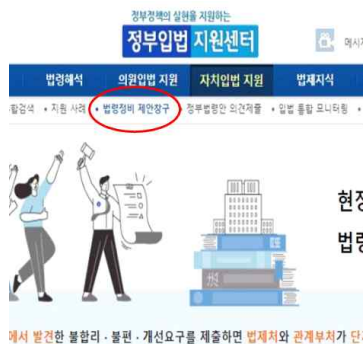
□ 지방정부 입법권 강화

-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명문화('26.7월~)
 - 부처에서 법령안을 입안할 때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선언
- 지방공무원 수요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개정 발간('26.9월)

□ 지방정부 법령정비 제안 창구 운영

- (제안창구) 지방정부의 현장 법령정비 수요를 직접 듣고, 검토하고, 정비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신설('26.1월)
- (협력체계) 지방정부의 제안사례 축적을 통해 지역·분야별 반복되는 문제점을 파악, 지방-법제처-소관부처 협력을 통한 일괄정비 지원

현장형 법령정비 제안창구 신설



지방정부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확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자치권 침해 행정규칙 사전차단

- (유형 발굴)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정규칙을 유형별(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 제약 등)로 발굴하여 정비·심사 시 활용
 - ※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행정규칙 기획정비 병행 추진
- (행정규칙 교차검토) 행정규칙 발령 전 사전검토 및 발령 후 사후심사를 병행, 자치권을 저해하는 행정규칙의 완전 차단 추진
 - ※ ('26년) 주요 국정과제 부처(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및 중기부) 대상 시범 운영 ⇒ ('27년) 전 부처로 확대
 - 발령 전 사전검토 후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미반영 사례의 경우 사후 심사를 거쳐 기획정비를 추진

①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 대한민국 대표 법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 도입[국정과제 24-1]

■ 국가법령정보센터란?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해석례 등 약 730만건의 방대한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법령검색시스템(일 평균 페이지뷰 수 2,133만건)

- (AI 법령검색) 공공성·무결성·포용성이 보장되는 법령정보를 국민·기업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하여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국민의 법령 접근성 제고
 - * 법령, 판례, 해석례, 입법배경 등
- (검색기반 고도화)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 도입,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 구축 등 단계적 개발 추진*
 - * ▲('26년) 시범서비스 실시(33.4억원 확보) ▲('27년) 대국민 서비스 개통 ▲('28년) 서비스 고도화

■ AI 법령검색 서비스 화면 예시 ■



□ AI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이란? ■

①정부입법지원센터(중앙부처 법령입안·심사, 자치입법 지원 및 법령해석 업무)와 ②국민참여입법센터(입법예고 및 법령정비 관련 국민 의견제시 창구)를 통합·운영하는 통합입법관리시스템

- 입법예고·의원입법 지원, 법령심사·해석 등 법제업무 전반의 AI를 활용한 자동화·지능화 추진*
 - ①관심 법령 입법예고 자동 알림, ②의원입법 협의필요 사항 소관 부처 자동 통보, ③법령심사·법령해석 쟁점별 관련 판례·결정례 추출 제공 등
 - * ▲('26년) 노후화 시스템 재구축, AI 기반환경 구성(71.9억원 확보) ▲('27년) AI 시범 프로그램 개발 ▲('28년) AI 자동화·지능화 서비스 개발 및 시범 서비스 운영 ▲('29년) 의원발의 통보 자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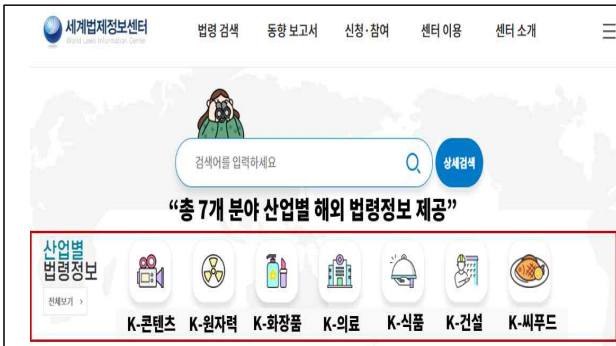
□ K-산업 수출의 나침반,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혁신[국정과제 103-4]

■ 세계법제정보센터란?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①해외법령(13개 언어권 58개국, 약 3만여 건)의 원문·영문본·한글 번역본을 국가/주제/산업(화장품, 식품 등 수출 유망 산업)별로 제공하고, ②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원하는 해외법령 원문·번역본 등을 신속히 제공하는 국내 최대 해외 법령정보 플랫폼(연간 방문자 수 313만명, 12.2.기준)

- (해외 법령정보 제공) 수출 유망 산업분야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업 수요 파악, 수출에 필요한 해외법령을 한글로 번역·제공
- K-기술 및 문화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로봇·방산·패션분야 해외법령 및 규제 정보 추가 제공 예정(산업부, 방사청, 중기부 협업)
- ※ 기업 수요 조사(2월), 번역 대상 해외법령 확정(5월), 한글 번역본 서비스 개시(7월)

< 산업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예시 >



< 산업별 협업기관 및 제공 현황>

연도	분야	소관부처	협업기관	제공현황
23년	콘텐츠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87건
	원자력	원안위	원자력안전재단	364건
24년	의료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74건
	화장품	식약처	-	67건
25년	식품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8건
	건설	국토부	해외건설협회	6건
	시푸드	해수부	해양수산개발원	17건

- (AI 세계법제정보)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①최신 해외 법령정보 수집, ②한글 번역본 수 대폭 확대 및 ③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 추진
- AI 기반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알림, 법령 특화 번역 솔루션 및 일상용어 검색 기능 개발*

* 과기부 주관 “공공 AX 프로젝트” 신규과제로 선정,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혁신 AI 개발·실증사업('25.9월~'26.12월, 총 39억원) 추진

■ AI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검색 화면 ■



②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 법령정보시스템 ODA 사업의 전략적 추진

- (국익 중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이 우리 기업(리걸테크 등)의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
 - 법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법치 기반 마련 등 협력국 자립 역량 강화 지원으로 글로벌 책임강국 위상 공고화
 - (ODA 협력 채널 다각화) 동남아 중심에서 중동·아프리카로 협력국을 확대하고, UNDP·월드뱅크 등 다자기구와 신규 협력사업 창출 추진
 - 이집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을 위한 한·법제처-이법무부 MOU 체결 추진 등 중동·북아프리카 협력 확대
- * '26년 KOICA 공공협력사업으로 추진 [1차 컨설팅 사업 응모(6월) → 선정(8월) → 착수(10월)]

③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위상 제고 및 글로벌 협력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란? ■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참여국 간 공동 법제연구, 지식 교류 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몽골·태국·우즈베키스탄 총 4개국 협의기구 ('25.11월~)

- (CALI 참여국 확대) CALI 참여국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 중국·일본 등 아시아 선도국을 포함하여 CALI의 대표성 및 위상 제고(~'26.下)
 - ※ 협의체 참여국 확대 방안
-
- ✓ 베트남, 네팔 등 CALI 참여 의사를 표명한 이력이 있는 국가 대상 우선 협의 추진
 - ✓ 중국, 일본, 인도 등 법제교류의 필요성이 큰 아시아 선도국 대상 법령정보·입법 동향 등 세미나 참관 초청 및 참여 유도
-
- (공동 연구 수행) 기후 변화, 인공지능 확대 등 공통의 법제 현안에 대한 연구 등을 공동으로 수행, 법령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체계화
- * 공통현안 연구(2월~), 정보·인적교류 위한 세미나(5, 7, 9월 등), 총회 및 결과발표(11월)
- (글로벌 협력 주도) 유럽·미국 등 법제당국 간 교류(수시)를 통해 각국의 법제시스템 발전방안 및 신산업 지원 법제 등 선진규범 모색

① 헌법가치에 기반한 법제업무로 정부입법 품격 제고

□ 법제업무 전 과정에 헌법 기반 확립

- (합헌성 심사 강화) 법령 심사 시 헌법 원칙을 입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 심사 과정에 헌법가치를 내재화
 - 종전 「헌법과 법제실무」를('08년 발간) 「합헌성 심사기준*」으로 전면 개편하여 심사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 정책의 입법과정에서 헌법가치를 수호·실현할 목적으로 법령의 입안·심사에 적용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원칙을 종합하여 정리한 기준
 - ** 30개 쟁점별[허가규정(과잉금지의 원칙), 급부·환경 규정(과소보호금지의 원칙) 등] 기준 작성·공유(~'26.12월)

■ 「헌법과 법제실무」 전면 개편 내용 ■



- (위헌법령 정비) 현재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령에 대해 법령 소관부처에 개정을 적극 권고하고 진행상황 지속 관리(연중)

정비 사례

- ▶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권의 귀속 주체 관련 사건(2021헌가3, '24.5.30.)
(재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 결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부)

종전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개선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한 비율대로 지급

□ 헌법가치에 기반한 법제업무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 현재의 최신 결정례, 위헌성 제거입법* 분석 등 최신 동향을 심사기준·교육자료 등에 반영하고 활용을 독려
 - * 최근 7년('19년~'25년)간의 현재 결정례 전수조사, 국회·법제처 연구자료 및 논문 분석으로 위헌성 제거를 위한 개선입법 논의 사항을 법제 실무에 반영 가능하도록 재구성

②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국정과제 100-1)

□ “내 삶을 지켜주는 헌법” 교육 확대 제공

- (국민 공감대 형성) 12.3. 국민주권의 날을 계기로 헌법이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인식 확산
 - 헌법교육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 (공무원 헌법 인식 제고) 중앙·지방 공무원, 군인·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
 - 교원을 위한 방학특강**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26.2월), 헌법과 행정실무를 연계한 “헌법과 행정실무과정” 신설·운영('26.3월~)
 - * 국민의 기본권 및 권력분립 중심의 '헌법 수호자 군·경이 알아야 할 헌법' 과정 개설('26.6월)
 - ** 교원의 적극적 헌법교육 참여를 위한 방학특강 과정 개설·운영(교육부 협업, '26.8월)
- (미래세대 교육) 학생·청년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헌법 강의 개시,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 추진
 - 일상 생활 속 헌법가치·기본권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 헌법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강의 대국민 제공**
 - * 사례로 풀어보는 헌법과 법률이야기, 현재 결정례로 살펴보는 국민 기본권 등('26.6월~)
 - ** '미디어로 보는 헌법' 등 정규 법제교육의 온라인 강의 제작·공개(법제교육시스템 '26.10월~)

□ 헌법 교육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헌법재판연구원, 지방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회의('26.4월·10월 및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적극 협업
 - 헌법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공유, 교육과정 교차 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활성화(연중)

■ 헌법교육을 통한 국민주권 가치 실현 ■



IV. 주요 쟁점이슈

① 법령정비 전담 체계 구축

□ 행정입법 상시정비 전담 체계 운영

- (현황) 국정현안 수행 및 불합리 규정 등 해소를 위해 분야별·이슈별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상시 추진체계 없이 개별·산발적인 정비 추진과 평가 체계의 부재로 성과 창출에 한계
- (법령정비 전담 기구 설치)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체계를 상시체계로 개편, 적극적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상시 법령정비 전담 기구’ 설치

◇ 참고: 전담 기구 설치 시 주요 추진업무

- ① 행정법령 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주기적인 행정법령 전수조사
- ②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법령 개선, ③ 불합리한 행정법령 발굴 및 일제정비 총괄·추진, ④ 사후입법영향분석 총괄·조정 및 수행체계 구축

②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정부 내 조정·총괄 기능 강화

□ 추진배경

- 국회 발의·통과되는 법안 중 의원발의 법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국정과제법안 등 정부 주요 정책의 의원입법 추진 사례는 증가
 - * 제22대 국회 의원발의안은 정부제출안의 31배이고, 국회 통과 법률안 건수는 19배
- 의원입법은 법안에 대한 정부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발의되어 정부 정책기조 불일치, 부처 간 이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상존
- 정부제출안 급감원인은 정부 내 이견 조정 절차 생략·우회 목적으로 추정, 우회 입법을 한 경우에도 범정부차원의 총괄·조율기능은 강화될 필요

□ 의원입법을 통한 정부정책 추진계획을 정부입법계획에 통합·관리 필요

- 부처 간 이견 가능성이 있는 입법과제를 의원발의 전에 정부 내에 사전 공유하여 조기 협의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 입법과제 관리 도모

□ 정부정책의 국회 심의과정 대응 강화

-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통일된 정부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참고) 예산 수반 법률안의 경우에는 정부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既 마련 (「국회법」 제58조제7항)